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5허9 거절결정(특)
원 고	A
피 고	지식재산처장 소송수행자 김성수
변 론 종 결	2026. 3. 10.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9. 19. 2025원53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보정발명

1) 발명의 명칭: 새로운 오픈구를 통하여 세균침투방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양변기

2) 출원일/출원번호 : 2024. 2. 12./제10-2024-20085호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2024. 12. 30.자 명세서, 갑 제2호증)

청구항 1 양변기와 같은 재질의 도기로 양변기 아래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되는 배관(1)사이에 원기둥 형태의 오픈구가 있는 일체형 케이스(6)와 케이스 커버(7)가 만들어진다. 이 일체형 케이스(6)의 케이스 커버(7)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열고 안에 다른 특허 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가 설치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여 오수 배출 시 압력으로 인하여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를 열고 닫아서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를 넣고 뺄 수 있어야 한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이 장치가 설치되어도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정화조로부터 배관(1)을 타고 올라오는 세균 및 해충, 악취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2중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

4) 이 사건 보정발명의 청구범위(2025. 1. 30.자 명세서, 을 제8호증)

청구항 1 양변기와 같은 재질의 도기로 양변기 아래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되는 배관(1) 사이에 원기둥 형태의 오픈구가 있는 일체형 케이스(6)와 케이스 커버(7)가

만들어진다. 이 일체형 케이스(6)의 케이스 커버(7)를 한 방향으로 열고 안에 세균침투 방지기가 설치되는 양변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케이스 커버(7)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여 오수 배출시 압력으로 인하여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마감한 장치.

청구항 3 및 4 (보정에 의해 삭제)

5) 발명의 주요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2024. 2. 12.자 특허출원서(을 제1호증)>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양변기의 S트랩(사이펀 원리)에 붙어있는 장치로써 **양변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양변기가 막혔을 시 간편하게 본 발명의 뚜껑을 여는 것**으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0002】 또한 내부에 세균침투방지기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VC 배관(3)에 연결되는 튜브벨브(5)와 여기에 붙은 자석밴드(4)를 통해 열리고 닫히며 정화조에서 배관(1)을 타고 역류하는 세균이 S트랩(사이펀 원리)을 거쳐 항문 및 공기 중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4】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도기로 만들어져 배관이 막혔을 시 도구를 통해 뚫지만 심하게 막혔을 경우 업자를 불러 변기를 뜯어내어 뚫기도 하는데 이런 불편한 상황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이 흘러내리는 S트랩(사이펀 원리)과 바닥의 배관(1) 사이에 변기와 일체가 되는 케이스(6)를 설치하고 뚜껑인 케이스 커버(7)를 여는 것으로 바닥에서 변기를 뜯어내지 않고 간편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0005】 또한 추가로 설치하는 **세균침투방지기로 정화조에서 배관(1)을 거쳐 올라오는 세균 및 해충, 악취를 차단하고 양변기 사용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 공기 중으로 퍼지는 세균으로 항문과 기관지로 감염이 되는 것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다.

㉰ **발명의 내용**

【0007】 본 발명의 목적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물건 중 하나가 화장실의 변기

이다. 이 변기는 사람의 배변활동 뿐 아니라 음식물 또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시중에 배관을 뚫은 많은 도구들이 가득하지만 이 도구들로도 뚫리지 않을 시 업자를 불러 변기를 바닥에서 뜯어내고 변기 막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번거로움 있다. 이를 **변기에 새로운 오픈구를 만듬으로써 간단히 해결**하고자 한다.

【0009】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양변기의 S트랩 부분에 변기와 일체된 케이스(6)가 만들어져 막힌 변기가 도구로 뚫리지 않을 시 케이스 커버(7)를 열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으로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5)를 연결, 평소에는 입구가 자석밴드(4)에 막혀** 외부에 단절이 되어 있다가 **변기를 사용 후 세척 시 발생하는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입구가 열리고** 오수가 **다 배출 되었을 때 다시 닫히도록**하여 세균 및 해충, 악취를 막는다.

【0015】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대해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1은 변기에 설치 시 본 발명의 상세도이며 도면 2는 본 발명인 새로운 오픈구를 설치한 단면도이다. 도면 3은 발명의 오픈구 상세도, 도면 4는 그 안으로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세균침투 방지기이다.

【0017】 도면 5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발명의 구조는 **오수의 배수를 위하여 양변기의 S트랩과 바닥에 매설되는 배관(1)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다.

【0018】 도면 6과 도면 7을 보면 **양변기의 S트랩과 바닥에 매설된 배관(1) 사이에 설치가 되고 설치된 일체형 케이스(6)는 케이스 커버(7)**가 있어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다.

【0019】 또한 일체형 케이스(6) 안에는 PVC 배관(3)과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5), 그 **입구에 둘러진 자선밴드(4)가 설치되 있어 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석밴드(4)로 인해 입구가 닫혀**있으므로 외부와 내부를 단절을 하여 정화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균과 해충, 악취가 원천차단 된다.

【0020】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과 오수가 흘러가면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생기는 압력으로 자동적으로 튜브벨브(5)가 벌려지게 되었다가** 오물이 다 흘러갔을시 자석밴드(4)로 닫히게 되는 원리이다.

【0021】 도면 8은 PVC 나 고무, 비닐 소재의 튜브벨브(5)를 이중으로 연결하여 보다 강력하게 세균과 해충, 악취를 차단한다.

㈑ **발명의 효과**

【0011】 본 발명으로 심하게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바닥에 **고정된 변기를 뜯어내지 않고 간단히 일체형 케이스(6)에서 케이스 커버(7)를 열고 간단한 도구로 막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안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세균침투방지기로 세균 및 해충, 악취를 차단**한다.

【0012】 **세균침투방지기는 튜브벨브(5)의 자석밴드(4)로 변기를 사용 안할시 에는 막혀**있으므

로 정화조에서 연결된 배관(1)에서 올라오는 **<u>세균이 S트랩(사이펀 원리)을 거쳐 유입이 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u>**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건강을 유지한다.

<갑 제2호증 특허출원서 최초도면>

도 1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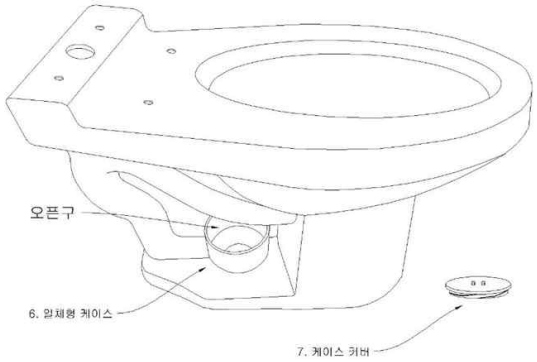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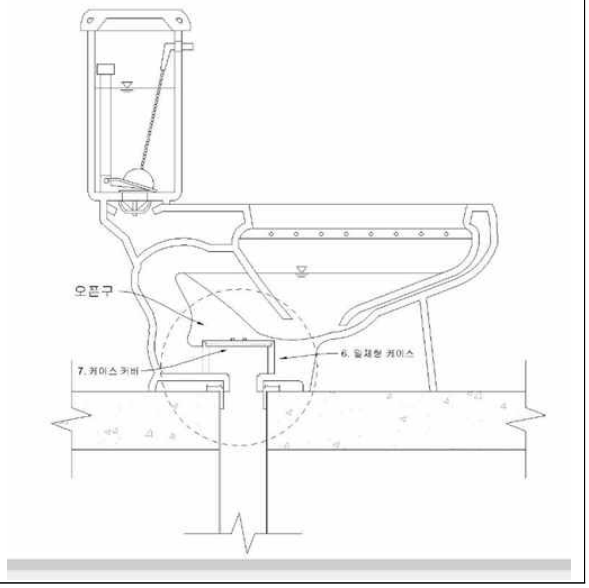

도 4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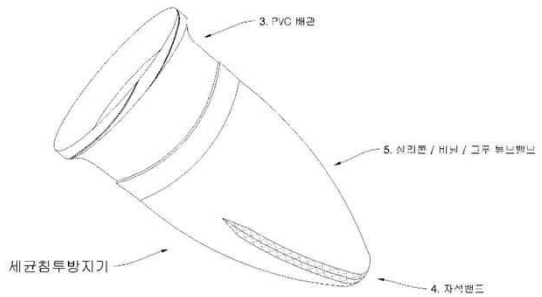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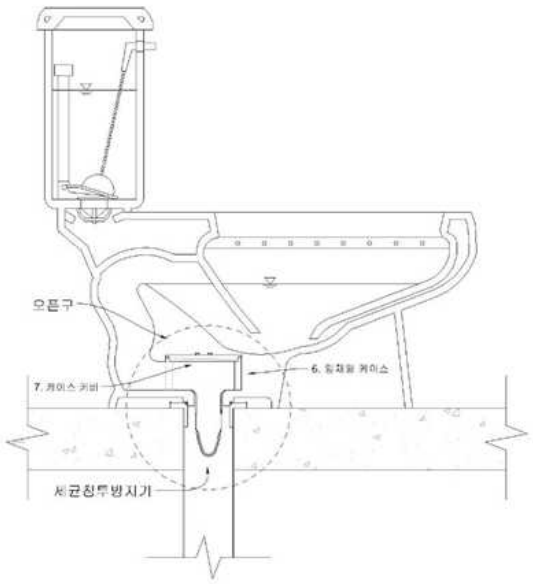

도 7	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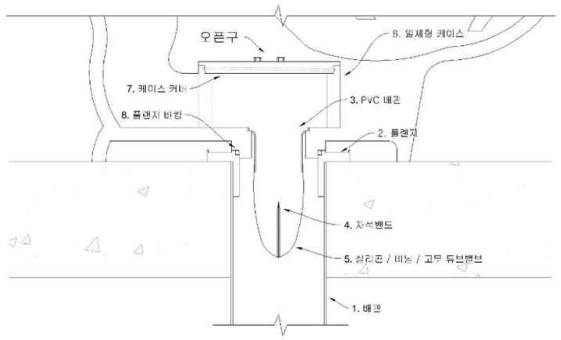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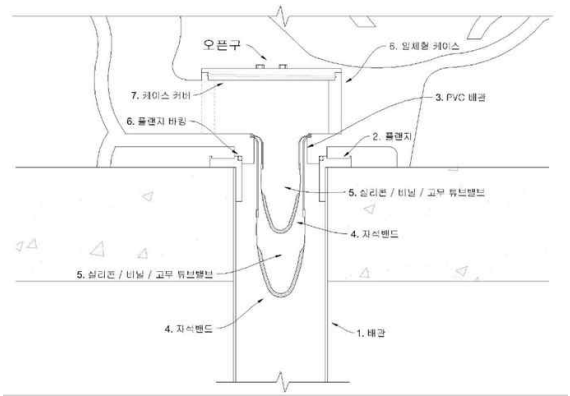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3호증)

1999. 6. 2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1-172736호에 게재된 '배수구체'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4호증)

2018. 11. 2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1920625호에 게재된 '양변기 세척수 소음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5호증)

2017. 3. 29. 공고된 등록번호 제10-1721378호에 게재된 '악취 방지와 사이펀 조기종료 기능을 구비한 변기 트랩'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2024.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항 출원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1[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4. 12. 30.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1. 10. '이 사건 제1, 2항 출원발명 및 도면 4 내지 8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보정이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청구항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3에 인용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인용발명 3에 인용발명 1,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최후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5. 1. 30. 보정을 하였으나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2. 24. 원고에게, '2025. 1. 30.자로 제출된 보정서에는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을 추가하였고,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을 도시하였으나, 이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서 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였다. 이어서 2025. 1. 30.자 보정이 각하되었으므로 2024. 12. 30.자 명세서에

1) 인용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의 선행발명 1 내지 3과 같다.

대해 심사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5. 1. 10.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기재된 "케이스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 및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포함된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 "도면 1에 도시된 "케이스 커버의 형상",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의 형상"은 모두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말미를 각각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로 기재하고 있어서 보호대상이 물건발명인지 방법발명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를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 구성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4) 원고는 2025. 3. 2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5원533호로 심리하여, 2025. 9. 19.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출원발명은 신규사항 추가,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 위반 등의 사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출원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보정발명에 포함된 '오픈구'는 최초출원서에 기재된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추가된 '고무링'이나 도면 1에 추가한 '오픈구 형상'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신규사항 추가로 보아 보정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2024. 12. 30.자 보정에 따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10-2024-0020084', '설치된다'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의 '새지 않도록 한다' 부분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한 출원거절결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오픈구가 있는 양변기'로, 선행발명 1, 2, 3과 전혀 다른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되는 것'을 포함하고, 도면 1에 '케이스 커버 형상'을 추가한 보정은 최초 출원 명세서에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어서 특허법이 금지하는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2025. 2. 24.자 보정각하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2025. 1. 30.자 보정이 위법하므로 2024. 12. 30.자 보정에 기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심결의 적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위법이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 및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가 포함된 것, 이 사건 제2

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 포함된 것은 모두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이므로 신규사항 추가로 보정이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2024. 12. 30.자 보정으로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이 추가되었고, 도면 4 내지 8에서 '자석밴드의 위치,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역시 위법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의 말미부가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고 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는 미공개된 '다른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 등을 청구항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청구범위가 특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보정각하결정의 위법 여부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2025. 1. 30.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제2항 보정발명에 기재된 '케이스 커버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하 '보정사항 1'이라 한다) 및 도면 1에 도시된 '케이스 커버의 형상'(이하 '보정사항 2'라 한다)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도 아니어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2025. 2. 24. 보정을 각하하였는바, 위 각하결정이 위법한지 살펴본다.

1) 관련법리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등).

2) 판단

가) 보정사항 1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일체형 케이스(6)는 양변기의 막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S트랩의 끝과 바닥에 매설된 배관(1) 사이에 형성되는 원기둥 형상의 오픈구이고, 케이스 커버(7)는 필요에 따라 일체형 케이스(6)를 개폐하고 배관(1)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와 세균을 차단하는 구성이다. 그런데 일체형 케이스(6)에 체결되는 케이스 커버(7)의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경우 고무링이 탄성 변형되면서 일체형 케이스(6)와 케이스 커버(7) 간의 접합부에 생기는 미세한 틈새에 밀착됨으로써 사이펀 작용에 의한 오수 배출시 오수가 일체형 케이스(6)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배관(1)으로부터 올라오는 악취와 세균을 더 확실하게 차단하고 케이스 커버(7)의 반복적인 개폐 과정에서도 변형 회복력에 의해 밀폐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체형 케이스(6)와 접합하는 케이스 커버(7)의 테두리를 고무링으로 마감함으로써 오수 누출, 악취 및 세균 차단, 밀폐성 향상이라는 작용효과가 발휘된다.

그런데 최초 명세서 등에는 이러한 '고무링'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무링으로 케이스 커버의 테두리를 막아 오수 누출과 악취 및 세균 차단 등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암시나 시사가 없다.

만일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고무링'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한다면 최초 출원 당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수 누출, 악취 및 세균 차단, 밀폐성 향상이라는 효과가 출원 이후 추가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어서, 출원 이후 보정을 통해 출원발명의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고무링 자체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고무링을 부가함으로써 앞서 든 것과 같은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고무링을 추가한 것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정사항 1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보정각하 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보정사항 2

원고는 2025. 1. 30. 보정을 통해 최초 명세서 등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커버의 형상'을 도면 1에 추가하였다. 위 도면 1에 도시된 케이스 커버(7)는 일체형 케이스(6) 입구에 삽입되는 삽입구의 외주면에 '고무링'으로 보이는 구성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둘러싸도록 형성된 것으로, 삽입구에는 상면이 턱지게 돌출되도록 연결되며, 그 상면에는 한 쌍의 돌기가 구비되어 있다. 즉, 2025. 1. 30. 보정이 반영된 도면 1에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은 '고무링'이 케이스 커버(7)의 삽입구 외주면에 하방에서 상방으로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구성이 추가된 것이다.

그런데 '고무링'을 추가한 것이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여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

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보정사항 또한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해당하는 점에서 보정각하결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검토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2025. 1. 30.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

나. 2024. 12. 30.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2025. 2. 24.자 보정각하 결정이 적법하므로 2024. 12. 30. 보정에 따른 이 사건 출원발명을 대상으로 한 거절결정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1) 신규사항 추가로 인한 보정의 위법 여부

가) 쟁점

2024. 12. 30. 보정으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이하 '보정사항 ①'이라 한다),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이하 '보정사항 ②'라 한다)가,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이하 '보정사항 ③'이라 한다)이,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이 각 추가되었고(이하 '보정사항 ④'라 한다), 도면 4 내지 8에서 '자석밴드의 위치, 길이, 형태'(이하 '보정사항 ⑤'라 한다) 등이 변경된 것이 최초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판단

(1) 보정사항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는 케이스 커버(7)가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열린다는 개시가 없다. 케이스 커버(7)는 원기둥 형상의 오픈구인 일체형 케이스(6)를 개폐시키기 위해 일체형 케이스(6)에 체결되는 구성이므로 케이스 커버(7)의 개폐 방식은 일체형 케이스(6)와의 체결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마개를 시계방향 또는 역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개폐하는 것은 널리 활용되는 기술 상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개 역할을 담당하는 '케이스 커버'를 시계방향이나 역시계방향으로 여는 것 역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정사항 ①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구성을 추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들어 위법한 신규사항의 추가로 볼 것은 아니다.

(2) 보정사항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 등에는 '특허출원 10-2024-0020084의 양변기 세균침투방지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초 명세서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출원발명을 인용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다면 외부 문헌에 의존하여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명을 해당 발명의 청구범위에 추가시키는 셈이어서 권리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정사항 ②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보정이 위법하다.

(3) 보정사항 ③, ④

이 사건 제2항 출원발명에 '케이스 커버 테두리에 고무링으로 마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과 도면 1에 '케이스 커버의 형상' 및 그 테두리에 고무링을 추가한 것은, 새로운 효과를 도출하는 구성을 출원 이후 추가하는 셈이어서 위법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함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4) 보정사항 ⑤

원고는 2024. 12. 30. 보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도면 4 내지 8을 변경하였다.

<table>
<tr><th>이 사건 출원발명
(최초 명세서)</th><th>이 사건 출원발명
(2024. 12. 30. 보정)</th></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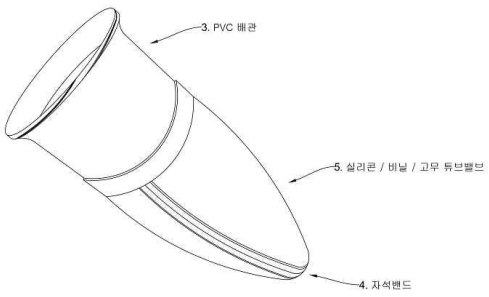

[도면 5]</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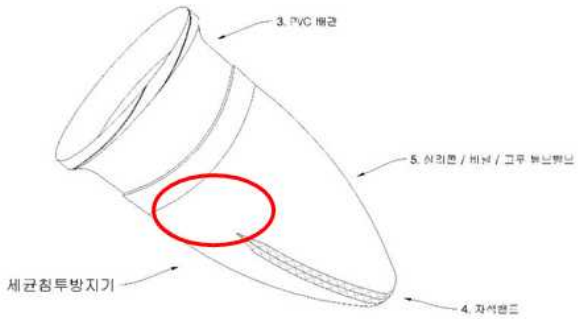

[도면 4]</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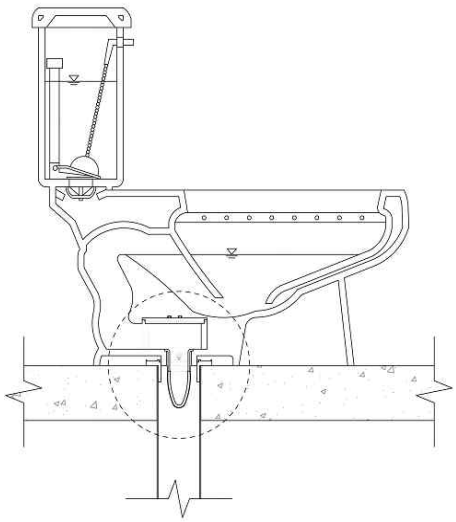
[도면 6]</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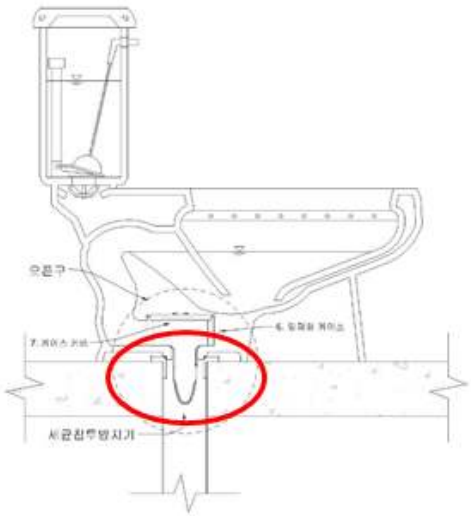

[도면 5]</td></tr>
</table>

<table>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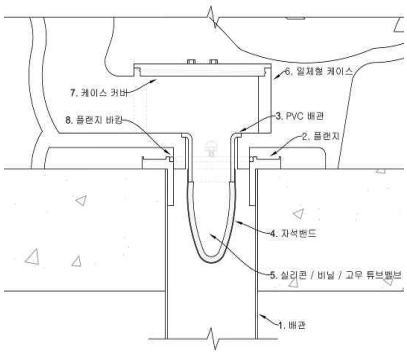

[도면 7]</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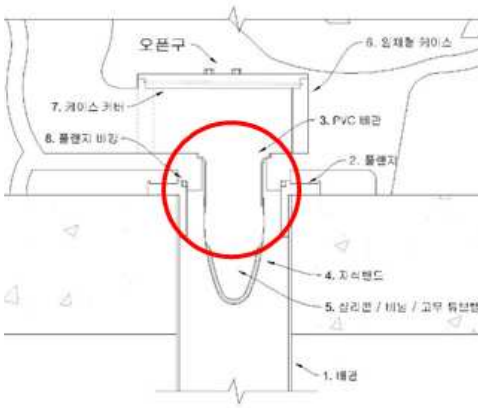

[도면 6]</td>
</tr>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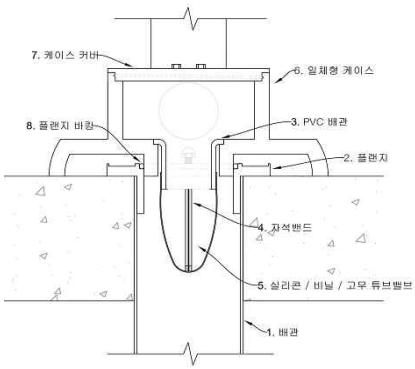

[도면 8]</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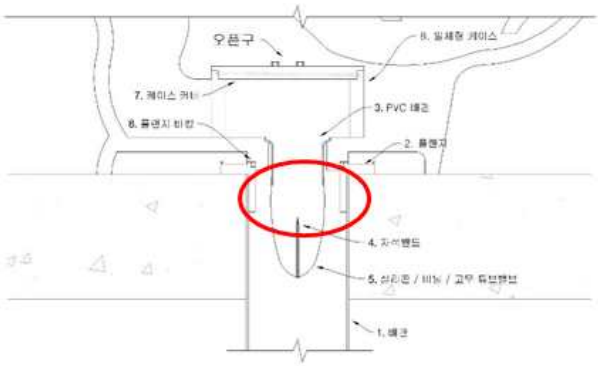

[도면 7]</td>
</tr>
<tr>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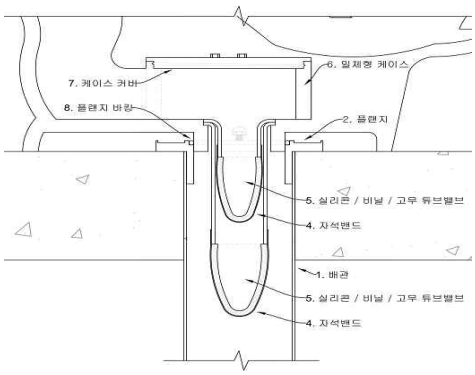

[도면 10]</td>
<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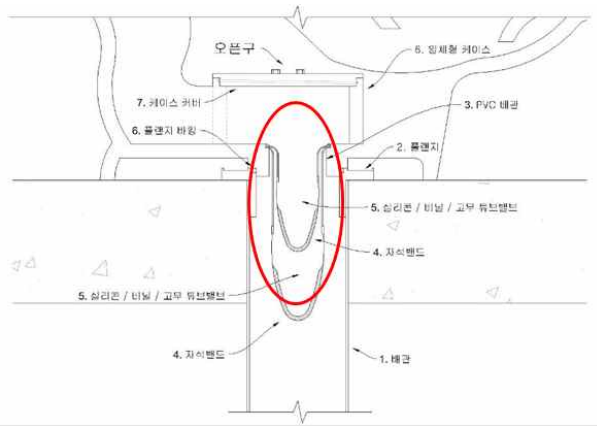

[도면 8]</td>
</tr>
</table>

2024. 12. 30. 보정이 반영된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를 최초 명세서 등의 도면에 도시된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보면,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5에서는 자석밴드(4)가 PVC 배관(3)과 만나는 경계까지 형성되어 있으나, 2024. 12. 30.

자로 보정된 도면 4에는 자석밴드(4)가 형성된 부분이 PVC 배관(3)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형상이다. 이는 최초 명세서에 첨부된 도면 8과 2024. 12. 30.자로 보정된 도면 7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6에는 세균침투방지기의 구조가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나, 2024. 12. 30.자 보정된 도면 5에는 이중 및 단일실선이 혼용된 형상이다. 이 또한 최초 명세서에 포함된 도면 7, 10과 2024. 12. 30.자로 보정된 도면 6, 8을 비교하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4 내지 8에 도시된 '세균침투방지기의 형상'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항에 해당한다.

다) 검토결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2024. 12. 30. 보정 중 보정사항 ①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보정사항들은 모두 최초 명세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된다. 이를 이유로 한 출원거절 결정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2) 청구항의 기재불비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의 말미부가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고 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된 것이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에 위반되는지(이하 '기재불비 사항 1'이라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인 '다른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가 청구항에 기재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청구범위의 특정이 어려워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이하 '기재불비 사항 2'라 한다)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지재되었는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재불비 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유형에 따라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은 청구항 말미에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대상을 포함하지 않은 채 각각 '설치된다', '새지 않도록 한다',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출원인이 특허로 보호받으려는 대상이 '물건'인지 '방법'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항 출원발명 및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출원발명은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2) 기재불비 사항 2

청구범위는 그 기재 자체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발명을 인용할 경우, 인용되는 다른 발명의 어디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게 된다. 더욱이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하여 제3자가 청구범위만으로 보호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미공개 상태로 거절결정된 특허출원 제10-2024-0020084호를 포함하는 것 또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명확성 요건에 위배된다.

다. 소결론

2025. 2. 24. 보정각하결정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제1 내지 4항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이지영

판사 성재혁

별지 1

선행발명 1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배수관거로부터의 악취나 소동물 침입의 방지**, 유닛 쿨러의 디프로스트 관의 동결 방지 혹은 다실 냉동고의 각 설정 온도의 유지, 또는 **목욕이나 주방 싱크대의 생활 배수관 등에 사용되는 트랩의 범주에 속하는 배수구체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내용**

【0007】 플랜지부(1)는, 배수구에 접속된다. 도면부호 4는 개구(4)를 나타내고, 이 개구부를 통해 배수가 노즐형부(2) 내로 유입된다.

【0008】 노즐 형상부(2)는 상기 플랜지부(1)에 접속하고, 중공 원통 형상의 둘레벽을 압축하여 그 측면 형상을 테이퍼 형상으로 한다(도 2, 도 3의 테이퍼면(20, 21) 참조). 노즐 형상부(2)는, 적당한 탄성 복원력을 갖는 재료(예를 들어, 합성 고무, 플라스틱 등)에 의해 구성된다.

【0009】 노즐 형상부(2)의 하부의 선단부(3)의 양 외벽에는, 내벽의 맞닿는 면(내평면)에 평행하게 박판 형상의 자석(10)이 접착제에 의해 부착되어 있다. 자석(10)의 표면은, 녹 또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가요성의 에폭시계 수지 등 적당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다(도시하지 않음).

【0010】 또한, 실시 형태에서는 선단부(3)의 양 외벽에 자석(10)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방의 외벽에 자석을 설치하고, 타방의 외벽에 철 등의 자성체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형상기억합금을 외벽에 부착하거나 소재에 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0011】 다음으로, 실시형태의 작용을 설명한다. **선단부(3)는 상기 자석(10)의 자기력(흡인력)에 의해, 내평면이 맞닿아 있다. 개구부(4)로부터 배수가 유입되고, 노즐형상부(2)의 내부에 소정량의 배수가 고였을 때에, 배수의 무게가 자석의 흡인력에 이기고, 내평면의 접촉을 해 있고, 배수를 외부로 유출한다. 또한, 소정량의 배수가 행해진 후, 선단부(3)(노즐 형상부(2)와 선단부(3)는 일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음)를 구성하는 재료가 갖는 복원력과, 자석(10)의 흡인력에 의해, 상기 내평면은 원래의 맞닿은 상태로 복원되어 밀봉을 유지한다.**

[0012] 도 4는 실시형태를 배수관에 부착한 상태의 부분 단면도이다. 도면 중, 부호 5는 흘림 등의 배수구, 부호 6은 배수관을 나타낸다. 실시방식은 배수구(5)와 배수관(6)의 연결부에 플랜지부(1)를 끼우고, 너트(7)를 통해 체결 고정하고, 배수구(5) 또는 배수관(6)의 관벽(8) 내면에 플랜지부(1)의 단부를 당접하여 배수구(5)와 배수관(6)의 패킹 작용을 갖게 하고, 배수관(6)에 내설한다.

㈐ **발명의 효과**

【0013】 이상과 같이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면, 재질이 특수 고무로 제한되는 일은 없고, 적당한 탄성 복원력이 있으면 합성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도 실시 가능하다. 특히, 내열성이나 내약품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갖는 재질을 선정하면 되고, 종래에 비해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또한, 특수한 가공 기술을 불필요하게 하여, 플랜지부, 노즐 형상부, 및 선단부를 금형에 의해 일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가 용이해지고, 나아가서는 제조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도 2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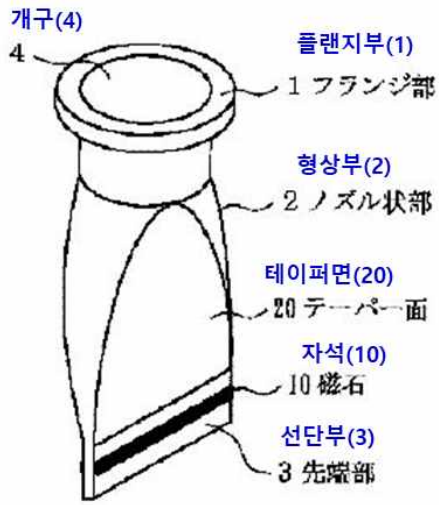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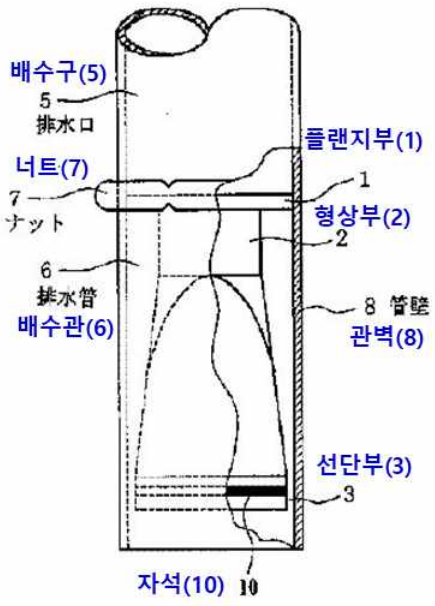

별지 2

선행발명 2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양변기 세척수 소음저감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양변기 사용 후 세척수의 배출시 발생되는 와류와 소음을 1,2차로 순차적으로 제어하여 와류를 차단시켜 유속을 제어하고 **소음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양변기는 세척수가 변기 내에서 심한 와류 운동을 일으키면서 격렬하게 하층으로 배수되므로 이의 **세척수가 최초로 배수되는 시점에서 많은 소음을 발생**하고 이 소음은 배수관체와 슬라브층을 통하여 하층에 소음을 전달하므로 이를 근원적으로 소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상기 세척수가 최초 낙하하는 지점에서 발생소음을 1차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양변기 사용후 세척수 배출시 발생되는 와류와 소음을 1,2차로 제어하여 와류를 차단시켜 유속을 제어하고 소음을 저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양변기 세척수 소음저감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0007】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저소음 관연결조립체의 외부로부터 **해충이 변기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

㉱ **과제의 해결 수단**

【0016】 상기 저소음 관연결조립체(20)는 층간관조립체(10)를 구성하는 외부고정관(12)의 하단끼움홈(12c)에 밀폐되게 상부 외주면이 결합되고, 상부 내주면과 하부 내주면에 상부걸림단(32)과 하부걸림단(34)이 형성된 외부엘보관(30)과; 외부엘보관(30)의 상부걸림단(32)에 상단 외주면이 탄력적으로 안착되고, 하부걸림단(33)에 하단이 탄력적으로 걸리게 되는 외부

탄성연질관(40)과; 외부탄성연질관(40) 상부 내주면과 외부엘보관(20) 상부 내주면에 상부 외주면이 탄력적으로 결합되고, 외부탄성연질관(40)과 내측공간(50a)이 형성되는 내부탄성연질관(50)으로 이루어진다.

【0024】 도 5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양변기(미도시) 사용후 내부에 채워진 적정량의 세척수를 내리면, **변기 내부에서 소음을 동반한 와류가 발생 되면서 세척수가 층간관조립체(10)의 저소음슬리브(16)와 내부조립관(14) 내주면에 외주면이 밀착되고, 하단이 내부조립관(14)의 하부걸림턱(14b) 내주면에 걸려진 세척수유입관(1)을 통하고 층간관조립체(10)의 내부조립관(14)을 통하여, 저소음 관열결조립체(20) 내부로 유입되어 와류가 차단되어 유속이 제어되면서 소음이 순차적으로 저감**된다.

【0025】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도 1 및 도 2에서와 같이 외부엘보관(30)의 상부끼움부(33) 내주면과 외부탄성연질관(40)의 상부안착단(41) 상부에 상부결합부(52)로써 탄력적으로 결합된 내부탄성연질관(50)의 내측만곡연결부(54) 내부로 세척수가, 중량에 의해 하방으로 떨어져, 외부탄성연질관(40)의 만곡연결부(43) 사이에 외측공간(40a)이 형성된 내측만곡연결부(54) 내벽에 부딪혀 내측만곡연결부(54) 하단에 마감된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로 떨어지면서 와류가 차단되고 유속이 제어되어 소음이 저감된다.

【0026】 이와 같이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로 떨어진 **세척수는 자체 중량에 의해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에 형성된 다수의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탄력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1차적으로 유속과 소음이 저감**된 세척수가 하부 영역의 외부탄성연질관(40) 내부로 배출되고, **배출이 이루어진 후 원상태로 오므라들게 되어 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게 된다.

【0027】 한편, 도 3 및 도 6에서와 같이 **외부탄성연질관(40)의 만곡연결부(43) 내부로 유입된 1차로 유속**과 소음이 저감된 세척수는 자체 중량에 의해 **외측반구형탄성마감부(46)로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탄력적으로 벌어진 배출공(44)을 통과하면서 2차적으로 와류가 차단**되고, 유속이 제어되며 **소음이 저감되어 외부파이프(60)를 통해 배출 처리되고, 이후 내측탄성편(55)과 탄성절개부(55a)가 원상태로 복귀**된다.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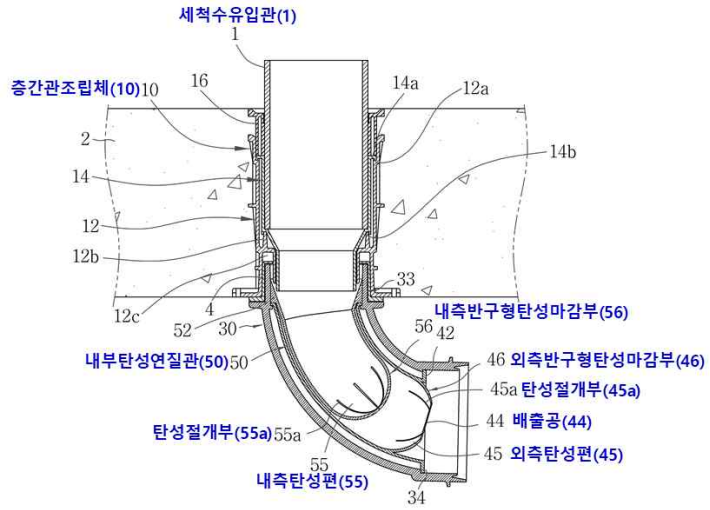
세척수유입관(1)
1
층간관조립체(10)
10
16
14a
12a
2
14b
14
12
12b
33
12c
4
52
30
내측반구형탄성마감부(56)
56
42
내부탄성연질관(50)
50
46 외측반구형탄성마감부(46)
45a 탄성절개부(45a)
44 배출공(44)
탄성절개부(55a)
55a
45 외측탄성편(45)
55
내측탄성편(55)
34

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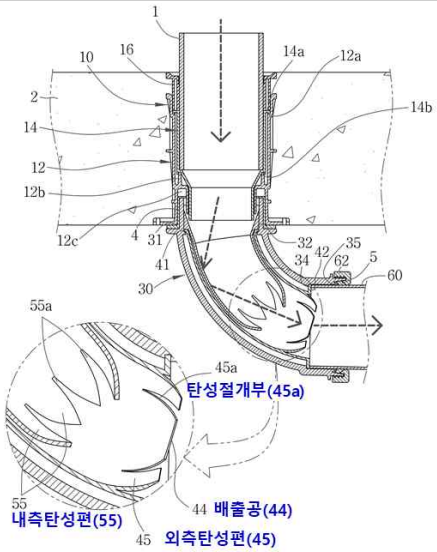
1
10
16
14a
12a
2
14b
14
12
12b
12c
4
31
32
35
42
34
62
5
60
41
30
55a
45a
탄성절개부(45a)
55
내측탄성편(55)
44 배출공(44)
45 외측탄성편(45)

별지 3

선행발명 3

㉮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변기의 오물배출과정에서 발생한 사이펀을 빠르게 종료시켜 세척수 낭비가 방지되고, 또한 **바닥배수관으로부터의 악취 유입도 방지되는 자유 회전식 트랩 개폐판을 장착한 변기 트랩에 관한 것**이다.

㉯ **발명의 내용**

【0041】 도 2는 본 발명 트랩이 장착된 변기와 건물의 층간에 설치되는 바닥배수관의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배수관은 지하 정화조에서부터 층층이 연결되며 최상단에서 건물 옥상을 통해 원활히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 배수관 내부의 오물가스압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트랩개폐판(41)은 닫혀 있으며, **완전한 수직 각도가 아니라 88~89도 정도로 살짝 누워있는 형태로 트랩관로(46)의 테두리에 밀착**되어 있다.

【0044】 **트랩개폐판(41)은 트랩관로(46)와 상기 유출구(45) 간 이음부위에 형성된 개폐판힌지(42)에 자유회전 가능하도록 안착 설치되며, 변기몸체(20)로부터의 배출수류에 의해 상기 트랩관로(46)를 개방하고 자중(自重)에 의해 상기 트랩관로(46)를 폐쇄**한다.

【0045】 **트랩개폐판(41)을 편리하게 개폐판힌지(42)에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유출구(45)의 상부에는 상기 트랩개폐판(41)보다 더 크게 개방된 개폐판삽입구(47)가 형성되고, 트랩개폐판(41)은, 상기 개폐판삽입구(47)를 통해 상기 이음부위로 삽입되어 상기 개폐판커버(43)의 밀봉에 의해 개폐판힌지(42)에 안착된 다음에 개폐판삽입구(47)는 개폐판커버(43)에 의해 밀봉**된다.

【0046】 결과적으로 **트랩개폐판(41)은 저널 부위가 일부 개방된 개폐판힌지(42)와 개방된 저널 부위를 고정하는 개폐판커버(43)에 의해 완전히 고정되고 그 상태에서 배출수류의 유동표면에 접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회전 운동 가능**하다.

㉰ **발명의 효과**

【0031】 본 발명에 따르면 일단 발생된 **사이펀의 폭주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 사이펀의 조기종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세척수의 낭비없이 강력한 사이펀을 일으키도록 변기를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0032】 아울러 평소 바닥배수관으로부터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

음은 물론 사이펀 작동이 끝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열린 트랩관로로 악취가 침투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뛰어난 효과가 있다.

【0033】 물론 상술한 **모든 기능를 발휘하면서도 어떠한 동력계통 모듈이나 타이밍 조절기구도 필요없고 경량의 저마찰 부품만으로 구성**되어 변기의 수명과 제조단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본 발명에 내재된 또 하나의 숨겨진 효과이다.

도 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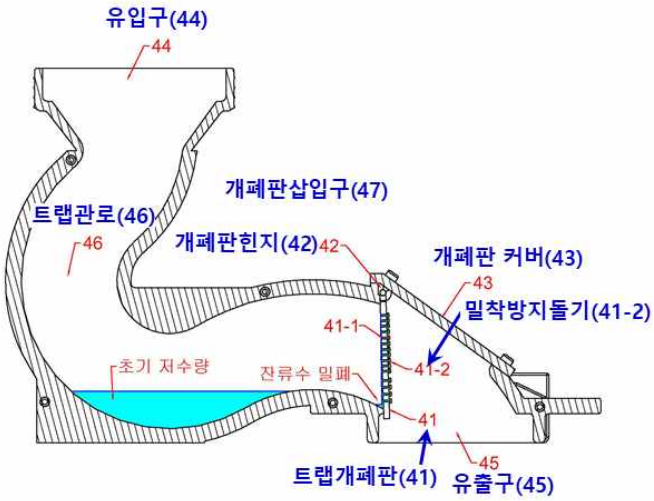
도 3b